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146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5년 2 월 일

□ 제안이유

-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범위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제2항 제3호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“보건환경국중 환경보건과, 녹지공원과”를 “보건환경국중 자원관리과, 환경보건과, 녹지공원과”로 조정

□ 검토결과

- 보건환경국에 자원관리과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□ 참고사항

○ 성남시 행정기구개편 요약

- 보건환경국에 “자원관리과”신설
- 도시주택국 “도시정비과” → “가로정비과”
- 건설교통국 “방재과” → “재난대책과”
- 도시정비사업소 “자원관리과” → “자원처리과”
- 구청 “허가과” → “건축과”

○ 금곡동 분동 → 금곡1동, 금곡2동